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107호 2015. 08. 1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63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사망자 소유 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서로18번길 7-1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8. 0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8-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2-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8번길 7-1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7-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23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7-1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25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7-7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번길 7-9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1-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409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0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5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0-2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20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29-1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166 (경서동, 대광로제비암)	2010-11-11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9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2-7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33-2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2-12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6 (검암동, 성은휴하우스)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4-16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24번길 20-1 (심곡동)	2009-09-22	심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4-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19번길 16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4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8 (연희동, 반안프라자)	2011-06-30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612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2-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44번길 6-17 (경서동)	2010-11-11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0-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26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0-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26-1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7-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7번길 13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8.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심곡로124번길 20-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심곡동 14-16	심곡로124번길 20-1	2015.07.27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가정지구 6블럭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드림시티건설 대표 이성규, 이옥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6블럭
 - 나. 대지면적 : 83,777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59,863.6506m²(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16개동(아파트 1,5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개동
 - 마. 사 업 비 : 616,291,942천원
4. 사업기간 : 2015. 06. ~ 2018. 03.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63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사망자 소유 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토지의 상속인께서는 보상협의를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기간 : 2015. 08. 10(월) ~ 2015. 08. 24(공고일로부터 15일간)**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 협의기간 : 현재부터 ~ 2015. 09. 18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5층, 032-560-4493)
- 협의 방법 및 절차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일반용1통, 매도용1통),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이력포함),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통, 통장사본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사업구간 편입 토지내역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잔여	
故안역만의 상속인	불 명	신현동	190-6	도로	8	8		

※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상속)가 완료되어야 보상협의 가능

5.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새로운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1. 개정 이유

-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를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이원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자문의 만족도와 성실도 제고
-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후관리 강화
- 직무관련사건 직무범위 구체화

2. 주요내용

-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으로 이원화 【안 제1조】
- 고문 위촉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및 정원 개정 【안 제3조】
- 공개모집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행위자의 경우 위촉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확보 【안 제4조】
- 직무관련사건 직무범위 구체화 【안 제5조】
- 소송수행실적 및 자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 반영 【안 제6, 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를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이원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자문의 만족도와 성실도 제고
-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사후관리 강화
- 직무관련사건 직무범위 구체화

3. 주요내용

-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으로 이원화 【안 제1조】
- 고문 위촉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및 정원 개정 【안 제3조】
- 공개모집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행위자의 경우 위촉을 제한하여 투명성을 확보 【안 제4조】
- 직무관련사건 직무범위 구체화 【안 제5조】
- 소송수행실적 및 자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 반영 【안 제6, 7조】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3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

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 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 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제3조제2항 관련)

청 령 서 약 서

나는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서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소송 및 법률 고문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 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외부변호사 선임에 대한 규정 및 기준 마련으로 특수사건대응 능력 강화
- 법률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법률자문의 주기능인 분쟁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형사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및 효율적 소송운영

2. 주요내용

- 외부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선임기준 및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안 제3조】**
- 고문변호사 형사사건 지급기준 신설 **【안 별표】**
-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방식 변경 및 수당 현실화 **【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외부변호사 선임에 대한 규정 및 기준 마련으로 특수사건대응 능력 강화
- 법률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법률자문의 주기능인 분쟁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형사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및 효율적 소송운영

3. 주요내용

- 외부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선임기준 및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안 제3조】**
- 고문변호사 형사사건 지급기준 신설 **【안 별표】**
-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방식 변경 및 수당 현실화 **【안 별표】**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①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 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 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

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자문료 등) 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

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소송사건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700,000원	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원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원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원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원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원	
	5억원이상	4,500,000원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1. 불기소(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무죄판결 - 착수금의 150퍼센트 - 다수관련사건의 경우 착수금의 150퍼센트에 무죄 피고인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 - 3호는 제외 2. 기소유예의 경우 착수금의 80퍼센트 3. 변호인의 노력으로 고소취하된 경우 : 착수금의 50퍼센트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4,000,000원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법률자문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자문료	건당 10만원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자문회의	1시간 기준 회당 10만원 (30분 미만 절사)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한다.
5.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 결과 및 평가표(제2조제2항 관련)

1. 법률고문 : ○ ○ ○

2. 자문 결과표

자문일자 (회시일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비고

3. 자문 평가표

평 가 항 목		점 수												
<p>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p> <p> </p>														
<p>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p> <p> </p>														
<p>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신기일</th> <th>5일 이내</th> <th>7일 이내</th> <th>10일 이내</th> <th>13일 이내</th> <th>15일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body> </table>		회신기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3일 이내	15일 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회신기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3일 이내	15일 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4. 법률자문에 대한 기타의견(자유롭게 기술)

5. 자문 난이도 평가 [법률 고문 운영 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p>o 자문의 난이도(50점)</p> <p> </p>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연번	자문일자	자문부서 (문서번호)	담당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회시일자	변호사 성명	평가점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정안 제4조제1항 [별표] 법률자문료 :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계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가. 법률 고문의 법률자문료 신설

- 자문료 : 건당 10만원, 자문회의 1시간당 10만원(30분 미만 절사)
- 변동사항 : 기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월 정액 30만원, 연예산 1천9백8십만원)을 폐지하고, 법률자문 회신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및 예산추계(VAT포함)

구 분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향후 예산추계 비교	
	2012	2013	2014	예상자문건수(추정) 200건	
자문건수	79	137	210	변경 전 (정액제)	변경 후 (실적제)
자문료 (월정액)	7,920천원 (220천원)	7,920천원 (220천원)	13,200천원 (330천원)	19,800천원 (고문변호사 5명)	22,000천원 (법률고문 5명)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 재 희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구체적인 소송대리인 선임 및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및 효율적 소송운영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2. 주요내용

-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규정 범위 확대 【안 제1조】
- “직무관련사건”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 등 신설 【안 제5장】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560-4064,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구체적인 소송대리인 선임 및 수행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및 효율적 소송운영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

3. 주요내용

-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규정 범위 확대 【안 제1조】
- “직무관련사건”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 등 신설 【안 제5장】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2호 서식)”를 “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선고”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5장 직무관련사건”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약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제27조(수임료)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

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 급(위) :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는 직무관련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인천광역시 서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
 (주소 : 시 구 동 로 번지 ☎○○○-○○○○)의 ○○○○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	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	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	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
 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 대
 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
 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
 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
 1, 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
 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
 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
 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
 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
 송을 말한다.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

 호서식)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
 -----어느 하나에 -----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

 -----어느 하나에 --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소송 주관 실·과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

-----감사실장-----
-----.

② -----

-----신고-----
-----.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26조(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

<신 설>

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제27조(수임료) 직무관련사건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신 설>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0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통장위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정 정비
- 「지방재정법」 개정('15.1.1.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사업비)에 대한 조례 지출근거 마련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 변경

2. 주요내용

- 통장신청에 있어 '통 관할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 삭제
 - 현실적으로 1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유능한 통장위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자격기준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
(※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둔 군구 : 서구, 중구)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통·반장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일부개정한다.

2. 개정이유

- 통장위촉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정 정비
- 「지방재정법」 개정('15.1.1.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사업비)에 대한 조례 지출근거 마련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 변경

3. 주요내용

- 통장신청에 있어 ‘통 관할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 현실적으로 1년이라는 거주기간은 유능한 통장위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자격기준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
(※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둔 군·구 : 서구, 중구)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통·반장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 등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정 할 ”을 “조정할”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0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이 위촉한다.

제7조제4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개통에 2인”을 “1개 통에 2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및 구산하기관”을 “및 구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구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시”를 “서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로 한다.

제13조 중 “반상회운영”을 “반상회 운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편의제공)”을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 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통의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③ (생략)

④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 위촉할 수 있다.

⑤ 통장 후보자가 1개통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30일 전-----

-----.

⑤ -----1개 통에 2명-----

-----.

제9조(임무)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따라-----

및 구 산하기관-----

② (현행과 같음)

<p>제11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u>서구구정소식지</u> 등을 정례 반상회의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p>	<p>제11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 ----- ----- -----<u>서구 구정소식지</u>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 -----.</p>
<p>제13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u>반상회운영</u>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p>	<p>제13조(운영실적의 평가) ----- -----<u>반상회 운영</u>----- ----- -----.</p>
<p>제15조(<u>편의제공</u>) ①·② (생략) ③ <u>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타 시·도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5조(<u>편의제공 및 사기진작</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참 고	관련법령 발취
------------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조례 제7조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 적용
 - 법령에 법적근거가 없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일부변경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 변경, 별지서식 일제정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중 '통 관할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자격요건 삭제
- 별지 「제2호, 8호, 10호, 11호」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전체 별지서식의 띄어쓰기, 용어(도로명주소 등) 일제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일부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조례 제7조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 적용
 - 법령에 법적근거가 없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일부변경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 변경, 별지서식 일제정비

3.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중 ‘통 관할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자격요건 삭제
- 별지 「제2호, 8호, 10호, 11호」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전체 별지서식의 띄어쓰기, 용어(도로명주소 등) 일제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초과 할 ”을 “초과할”로, “재위촉 할”을 “재위촉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 할 수”를 “제한할 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일임 할”을 “일임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공 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0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56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 1. 통 명 : 동 제 통
- 2. 성 명 : (한자)
- 3. 생 년 월 일 :
- 4. 주 소 :
- 5. 직 업 :
- 6. 최 종 학 력 :
- 7. 주 요 경 력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동 제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구비 서류 이력서, 봉사활동실적, 기타

[별지 제4호서식]

위 축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 위축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 의 기 준			배점	성명 및 심사결과			비 고
총 점			100				
지역사회 기여도	1. 관찰구역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10				◦ 주민등록등본 확인
		나. 2년 이상	7				
		다. 2년 미만	5				
	2. 최근5년간 사회봉사 활동실적	가. 10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 인증기관이 발행하고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활용한 확인서만 유효
		나. 60시간 이상	7				
		다. 30시간 이상	5				
		라. 30시간 미만	3				
	3.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가. 10% 이상	10				◦ 세대주 동의 (별지 제13호서식)
		나. 5% 이상~10%미만	5				
다. 5% 미만		3					
업무수행 능력	4. 직업결직	가. 직업 없음	10				◦ 사실확인
		나. 자유(영)업 종사	7				
		다. 직업 있음	3				
	5. 행정 관심도(참여)	가. 탁 월	30				◦ 구 및 동 업무내용 파악 등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면접평가	6. 면 점	가. 탁 월	30				◦ 질문 답변을 통해 확인 ◦ 질문서는 지침으로 관리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주) 1.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사회 기여도」 중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사항은 통 여건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 통장위촉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동 통장위촉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위촉심사위원

(서명)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위 축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으로 위
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동장

에 의하여 제1순위 후보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순위 후보자를 위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순위 후보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반상회 운영)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개최하며 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 ⑤ (생략)

----따라-----
 -----.

 --.

제15조(반상회 운영) ① -----

 -----월 1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참고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